

[붙임1]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정관변경 (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후 (안)	개정이유
제 14조(주주 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 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4조(기준일) ①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 정비에 따른 정관 개정 반영
제 18조(소집시기) ① (생략)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8조(소집시기) ① (생략)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4조2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기준일 정비에 따른 정관 개정 반영
제 20조(소집 통지 및 공고) ① ~ ② (생략)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 20조(소집 통지 및 공고) ① ~ ② (생략)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제 22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제 22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에 대한 내용 추가
제 5장 이사 · 이사회 · 감사	제 5장 이사 · 이사회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목차 명칭변경
제 30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생략)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하고,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제 30조(이사의 수) ① (생략) ② (삭제)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제 31조의2 (감사의 선임·해임) (신설 2021.03.30)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본 정관 제31조 분리 개정 2021.03.30)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본 정관 제31조 분리 개정 2021.03.30)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본 정관 제31조 분리 개정 2021.03.30)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21.03.30)	제31조의2 (삭제)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정관변경 (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후 (안)	개정이유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1.03.30)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제 32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생략)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를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32조(이사의 임기) ① (생략) ② (삭제)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제 33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3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제 35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① ~ ③ (생략)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① ~ ③ (생략)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u>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u>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에서 감사위원회로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제 36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 35조의2의 제3항의 규정을 준용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36조 (삭제)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제 37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37조 (삭제)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제 38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 38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제 40조(이사회회의 의사록) ① (생략)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0조(이사회회의 의사록) ① (생략)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정관변경 (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후 (안)	개정이유
< 신 설 >	제41조(위원회) (신설)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②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립 규정 추가
< 신 설 >	제 4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신설)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립 규정 추가
< 신 설 >	제43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립 규정 추가
< 신 설 >	제44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립 규정 추가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정관변경 (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후 (안)	개정이유
제 41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근속 1년에 대하여 월평균 급여액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년수를 승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단, 근속년수가 1년 미만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수 계산하고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개정 2021.03.30)	제 4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근속 1년에 대하여 월평균 급여액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년수를 승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단, 근속년수가 1년 미만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수 계산하고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제 42조(상답역 및 고문)	제 46조(상답역 및 고문)	
제 43조(사업연도)	제 47조(사업연도)	
제 44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u>감사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③ <u>감사</u> 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제 48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u>감사위원회에</u> 제출하여야 한다. ③ <u>감사위원회</u> 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감사에서 감사위원회로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제 45조(이익금의 처분)	제 49조(이익금의 처분)	
제 45조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50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u>감사위원회가</u> 선정한 <u>외부감사인</u> 을 선임하며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에서 감사위원회로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제 46조(이익배당) ① (생략) ② 제 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 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조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 51조(이익배당) ① (생략) ② <u>회사는 제 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 ③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④ <u>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u>	결산배당기준일 정비에 따른 정관 개정 반영
제 47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제 52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부칙 (신설)	부칙 제3조 (시행일) 1.~19. (현행과 같음) 20. 이 정관은 2023년 3월 23일부터 변경·시행한다.	